

圖書館 發展을 爲한 基盤定立

孫 正 彪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1. 서 언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도서관계는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급속한 구조적 변화와 직면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금년부터 본격화된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이함으로써 지역사회, 경제개발, 지방문화의 발굴·발전 등의 문제가 주요 당면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가 하면, 학교교육면에서는 1987~1988년에 걸쳐 제5차 개정교육과정의 공포되고 점차 자율화, 정보화, 국제화 방향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사회에 적응할 인간상의 정립과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비한 교육강화와 더불어 이의 실천을 위한 교수-학습방법도 교사중심 수업전개 방법에서 학생중심 학습활동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고, 대학교수도 정신적·물질적·학술적 중심체로서의 대학문화정착이라는 MOTO아래 1991년부터 안정된 면학분위기 조성 및 교수의 연구·강의 능력 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과 더불어 대학평가 인정제 도입을 통한 교육의 질적 수준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산업정책부문에서는 금년부터 시행되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 따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상품 및 신제품 생산등의 첨단기술산업육성에 주력하는 다방면에서 구조적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도서관들도 그러한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 질적 정보의 축적을 통한 교수-학습, 연구-조사간의 보다 밀착된 상호유기적인 관계정립과 지역경제-문화발전을 위한 봉사구조체제의 강화 및 기능관의 재정립의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개개 단위 조직을 위한 역할수행만이 아니라 전 도서관들이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 국가정보원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그러나 현 실정을 보면 그동안 장족의 발전을 가져왔다고는 하지만 이미 각종 대회나 논문등을 통해 널리 주지된 바와같이 모든 관종이 공히 시설·자료·인적 구성면에서 아직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 법적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제7차 경제사회발전 문화부문 5개년 계획에서도 국립부산도서관건립, 시·구·군단위 공공도서관 미설치지역 도서관 설치 계획(231관→500관) 및 공공도서관의 지역문화정보센터로의 기능강화, 전국 15개 시, 도소재 도서관에 문화강좌개설 등을 수립해 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공도서관 설치위주로 그친 채 종합적인 공공도서관 정책과 구체적 추진사업계획은 새로이 발족된 도서관발전위원회와 도서관정책과의 활동에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변화로 볼 때 도서관정책도 모든 관종을 하나로 묶은 단일화 또는 공동발의 형태의 종합정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놓여 있음에도 정책부서가 문화부와 교육부로 이원화 되어 있어 부처간에 긴밀한 협

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공도서관정책 이외에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필자는 도서관들로 하여금 그러한 사회구조 변화에 신속히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단일 관중만을 위한 발전계획수립이 아니라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통한 명실상부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수립이 그 어느때보다도 시급한 실정에 놓여 있음을 관계당국에 촉구하는 의미에서 직원·자료·시설을 중심으로 도서관발전기본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보기로 하겠다.

2. 도서관 관리·운영의 전문성제고와 직제확립

도서관 경영의 3대요소라 하면 시설, 자료, 직원을 들 수 있으며, 그중 가장 중요한 요소가 곧 직원이라 하겠다. 설령 시설·자료·예산이 봉사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봉사구조체계의 확립으로부터 경제적, 효율적인 봉사정책과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인적 자원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질적 도서관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렵다함은 재론 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금년을 전후해서 추진 중에 있는 전술한 사회·경제·문화·교육부문의 일련의 사업들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 도서관들의 현황을 보면 현행법적기준의 과반수도 확보하지 못한 도서관만도 공공도서관이 전체의 81%, 대학이 31%에 달하고 있고, 학교도서관은 그나마도 유자격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있는 학교수가 총 1,045개교중 고작 8.4%에 불과하며, 심지어 국가과학기술정보유통의 선도적 역할을 맡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소 정보관리부서조차도 적정소요인원의 50%에도 못미치고 있어 이러한 상태하에서는 기본적인 업무마저도 수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 하겠다.

따라서 전술한 일련의 국가정책들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무엇보다도 도서관봉사구조체계의 강화가 뒤따르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문화부, 교육부, 과학기술처 등 관계부처들은 그러한 체제정립의 선결과제가 전문인력의 확보와 더불어 후술할 관리직의 전문성 제고 및 직제확립이라는 점을 재인식하여 부처간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적어도 다음과 같은 수준은 될 수 있도록 실현성있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① 공공도서관 : 후술할 시점 및 자료확충계획을 감안하여 사서직원 1인당 인구 46,800명인 현수준을 인구 11,000명당 사서직원 1인, 5,000~7,000명당 전체직원 1인으로 상향조정(외국기준 2,000~2,500명당 1인 임).
- ② 대학도서관 : 4년제는 현재사서직원 1인당 학생수 570명 정사서(1, 2급)1인당 765명을 362명당 1인으로, 전문대는 현재 사서직원 1인당 학생수 1,615명(정사서 1인당 3,560명)을 509명당 1인(선진국은 석사학위 이상 전문사서 1인당 240~300명 임)으로 상향조정
- ③ 학교도서관 : 현재 8.4%수준인 초·중·고등학교 유자격 사서교사배치율을 현행법정기준(국민학교 36학급미만 사서교사, 겸임사서교사 또는 실기교사(사서) 중 1인, 36학급이상 사서교사 1인 또는 겸임사서교사와 실기교사(사서) 각 1인, 중·고등학교 24학급미만 사서교사 1인 또는 겸임사서교사와 실기교사(사서) 각 1인, 24학급이상 사서교사 2인 또는 사서교사와 겸임사서교사 각 1인이나 사서교사와 실기교사(사서) 각 1인의 수준으로 상향조정
- ④ 전문도서관 : 특히 과학기술부문의 경우는 연구기술원의 3.4%수준인 현직원수를 7%수준까지 상향조정
- ⑤ 사서직원 비율 : 현재 공공도서관 전직원의 32.4%, 4년제 대학도서관 전직원의 58.6%, 전문대 도서관 전직원의 49%인 전직원에 대한 사서직원 비율을 공히 65%(정사서 40%, 준사서 25%) 수준으로 하고,

전문도서관의 경우는 현 41%를 2급이상 정사서수가 전직원의 50% 이상이 되도록 상향조정 하되, 대학도서관과 전문도서관은 고급인력이 필요시 되기 때문에 1급정사서를 가급적 많이 배치토록 함

- ⑥ 도서관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유보조항으로 남아있는 '대학도서관 사서직원 배치기준'과 '사서교사배치기준'의 관계법령(교육법시행령 또는 대학설치기준령 및 전문대학설치령)으로의 이관

(2) 사서직급 및 사서교사 자격기준 조정과 도서관 관리직의 사서직 보임 확대

도서관업무란 책이나 대출하는 단순업무가 아니라 10년마다 3배로 증가하는 막대한 정보원을 조사·수집·분석·정리하고 미시적 정보에 이르기까지 각종 연구지원을 위한 정보분석 및 제공, 번역 및 가공, 정보검색의 신속화를 위한 각종 서지작성 등 전통적인 업무만이 아니라 업무전산화를 위한 시스템분석 및 설계, 주제분석, 각종프로그램의 개발업무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계속적인 연구와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하는 복잡업무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업무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정확한 정책 및 계획수립과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경영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정보봉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사서직원 체제가 제도적으로 확립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제도를 보면 국가 및 지방공무원 사서직은 물론 사립대도서관 사서직도 공히 전문직으로서의 상한직급이 4급으로 한정되어 있고, 직제도 사서직 또는 행정직으로 복수제를 채택한 직위에는 대부분 행정직으로 보임 되어 있는가 하면, 4대 전문직 업무의 하나인 수서업무의 장도 일반행정직으로 보하고 있다. 또한 국·공립공공도서관장도 1997년 1월 1일부터는 사서직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어 앞으로 그 기대가 크지만 1996년 말까지는 행정직과 복수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1996년 말까지 설립이 완료될 미설치구역 269개관도 강력한 인사조치가 없는 이상 대부분 행정직으로 보임될 우려성이 높으며, '보'의 의미도 '임명'을 뜻하는 것이지 '일괄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997년 1월 1일이후에야 비로서 행정직관장이 타직무로 전보되거나 정년퇴임에 의해 공석이 될 경우 및 신설도서관에 한하여 사서직으로 보할 가능성이 짙어 실질적인 교체기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의문시된다. 이뿐만 아니라 대학도서관도 전임부관장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부 사립종합대를 제외하고는 임기제형태의 교수겸직 관장제만을 채택하고 있는가 하면,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도 일반교사로서의 자격과 사서교사의 자격을 동시에 요구 하고 있음에도 특수교사계열에 묶어 놓아 승진의 기회가 전혀 부여되지 않고 있어 현직사서교사의 사기는 물론 발령기피현상도 초래될 우려성이 짙어 이러한 실정하에서는 현실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동기유발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관계부처는 이들의 문제가 도서관인의 오랜동안의 숙원과제이자 도서관발전을 위한 기반정립의 선결과제라는 점을 상기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① 작년 12월 17일 직제개편에 따라 이미 국립중앙도서관의 부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있고, 국립부산도서관의 건립을 계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7년 1월 1일부터는 국·공립공공도서관장도 사서직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은 적어도 내년까지 현 4급에서 2급으로, 지방공무원은 1996년까지 현 4급에서 3급으로 사서직급을 상향조정토록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고, 더불어 사서직 업무의 속성으로 보아 현 행정직군 산하에서 분리하여 독립직군으로 하여야 할 것임
- ② 금년부터 추진될 지역문화정보센터로의 기능 확장과 공공도서관 협력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년을 원년으로 한 공공도서관 사서직 보임 중·장기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할 것임
- ③ 문화부 도서관정책과,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연수과 및 남본과장은 서기관 또는 사서서기관, 지도협력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들 부서들의 직무내용이 전문직 업무이므로 공히 사서서기관으로

보하도록 직제를 개정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임.

- ④ 대학도서관장은 전문직 전임 관장제 채택이 바람직하겠으나, 현행처럼 교수직으로 겸보할 경우에는 종합대의 경우 전문직 전임부관장제를 신설하여 사서직 3급으로 보하도록 서울대 및 국립학교설치령, 학교법인정관(준칙)의 도서관직제를 개정하도록 하고, 아울러 그러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임용령, 학교법인정관(준칙)에 명시된 사서직급을 상향·조정도록 하여야 할 것임.
- ⑤ 서울대의 경우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사서서기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들 부서들의 직무내용이 전문직 업무이므로 사서서기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기타 국·공립대도 그 직급을 사서서기관으로 상향조정하고, 행정직(일반직)으로 보하도록 된 수서과장도 국공립대는 사서서기관, 사립대는 사서참사(4급)로 보하도록 서울대 및 국립학교 설치령과 학교법인 정관(준칙)을 개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⑥ 사서교사 자격기준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함과 더불어 승진기회의 부여를 위해 주임사서교사제를 채택하도록 하고, 이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교육법 및 동시행령과 주임교사 임용규정등을 개정도록 하여야 할 것임.
- ⑦ 사서전문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8·9급 사서직 공무원 임용시험에 전공과목 신설

(3) 공공도서관 지도·감독체제의 일원화와 행정체계 확립

공공도서관의 지도·감독체제의 일원화와 행정체계 확립의 문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되어온 도서관계의 오랜 숙원 과제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이 그 당위성을 피력할 필요조차 없는 문제이다. 더우기 이들의 문제는 공공도서관 행정업무의 문화부 이관 당시 도서관인 모두가 해결되기를 기대했던 것이지만 교육부와 내무부로 이원화된 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고, 그것도 문화부가 직접 지원·지도할 수 있는 도서관은 내무부소관의 43개관만일 뿐만 아니라, 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법조문(22조)에까지 이의 구분을 명문화 해 놓음으로써 오히려 이원화를 고착시켜 놓은 듯한 인상을 주고 있으며, 행정체제도 문화부에 도서관정책전담과만 작년 12월 17일에 설치되었을 뿐 도서관정책을 강력히 집행해나갈 각 시, 도별 하부조직은 아직 설치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실정하에서는 공공도서관정책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이를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펼쳐나가기 어려움은 물론 광역도서관망 구축을 통한 단일화된 정보유통구조체제의 확립도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일관성 있는 정책의 실현과 소신있는 정책의 집행을 통해 명실상부한 지역문화정보센터로서의 공공도서관의 위상을 정립하려면 조속한 시일내에 다음과 같이 그 지도·감독체제를 일원화하고 행정체제도 확립시켜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① 모든 공공도서관을 문화부소속으로 일원화하며 국립중앙도서관을 외청으로 한 특별지방행정기관체제로 하고 중앙집중식 관리체제를 채택하거나, 이 방안이 재산이관 절차상의 문제, 이관되는 도서관 운영비의 문화부 부담문제, 직원의 소속 변경으로 인한 신분상의 변동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부처간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운영으로 일원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② 공공도서관을 지방자치단체 운영으로 일원화할 경우에는 지방단위에서의 도서관행정기능강화와 도서관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 시·도에는 공공도서관과를 시·군에는 공공도서관 전담계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함.

3. 시설 및 자료확충과 재원확보

도서관의 발전은 한나라의 문화지표의 척도를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공공도서관으로 하여금 현재의 공부방 역할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연구적 기능과 지역사회 지식향상을 위한 문화적 기능 및 평생교육의 장으로서의 공공교육적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지역사회 지식 및 문화활동 중심기관이요 국민독서생활화 추진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도록 하고, 대학도서관으로 하여금 교수-학습도서관적 기능과 연구도서관적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대학교육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고, 학교도서관으로 하여금 종합교육자료센터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학생들 스스로 현재와 미래사회의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지닐 수 있도록 문제해결능력, 판단력, 창의력 등의 개발과 교수-학습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고, 전문도서관으로 하여금 자기 전문분야의 최신 정보의 수집·가공·분석·재생산·출판·배포등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전문인적 자원확보와 더불어 조직적, 계획적인 장서개발과 시설확충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재원확보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황을 보면 선진국에 비해 법적기준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은 법적기준 미달관이 자료 75%, 시설 31%, 인구 18만명당 1개관 설치, 대학도서관은 법적기준미달교가 자료 63%, 시설 66%로 나타나고 있고, 학교도서관은 미설치교만도 36%로서 가장 낙후된 상태에 있는가 하면, 과학기술분야 연구소 정보관리부서조차도 자료는 한국도서관협회 제정 1981년도 기준의 50%, 연속간행물은 동기준의 10%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수준에서는 상기한 기능들의 30%도 수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 하겠다.

따라서 관계당국들은 이와같은 시급한 실정을 감안하여 도서관발전기반정립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적어도 다음과 같은 수준은 될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 공공도서관

가. 시설확충

- ① 시(구설치시제외)·구·읍당 1개관을 설치하되, 인구 20만 이상 시·구의 경우는 인구 88,000명당 1분관을, 군에는 면단위 분관(유휴교실 활용)을 설치하고, 시·구·군에 1대이상 이동도서관 배치
- ② 1만세대이상 아파트단지 설립시나 도시재개발시에는 건물면적 800㎡이상의 도서관(중규모분관)건설을 위한 부지를, 2천세대 이상의 경우는 330㎡이상의 분관설치 건물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주택건설촉진법과 동시행령 및 도시재개발법의 개정 추진
- ③ 독서생활화를 위한 기반구축: 대도시는 중앙관-구단위도서관-분관(대·중·소) 및 이동도서관-기탁소 및 대출문고로 이어지는 단일공공도서관 시스템 구축을, 군단위지역은 군단위 도서관-면단위 대출도서관(면단위분관)-자연부락대출문고로 이어지는 지역망 구축
- ④ 인구 1인당 건물면적은 현 0.01㎡를 0.016~0.023㎡로, 열람석은 현 인구 1천명당 3.15석을 2.8~4석으로 상향 혹은 하향조정
- ⑤ 공공도서관 건물의 내부공간구성은 폐가제중심, 독서실 중심을 지양하고 개가제 중심, 이용자별 자료 중심,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중심공간구성으로 전환
- ⑥ 신체장애자 봉사를 위한 시설, 설비확충

나. 자료확충

- ① 인구 1인당 장서수 0.12권, 연간증가 0.014권인 현수준은 인구1인당 장서수 0.5권, 연간증가 0.05권 수준으로 상향조정

- ② 신체장애자 자료확충 : 인구5만이상 시의 경우 기본장서의 2.5% 이상의 점자자료와 1.5%이상의 녹음 도서(카세트테이프) 및 이들 기본자료의 10%이상의 연간증가자료 비치
- ③ 읍단위 이상 도서관에서는 향토자료를 군단위 이상 지역 및 지방대표도서관과 시의 중앙관에서는 지방행정자료를 가능한한 망라적으로 수집토록 하고, 각 시의 지역대표도서관 및 중앙관, 군 지방대표 도서관에서는 지역사회의 기간육성 산업관련 국내자료는 포괄적 집서수준이 되도록 지역별 자료특성화를 도모하여 도서관협력망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도록함
- ④ 자료구입비는 현재 도서관운영비의 6.8%수준을 20%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아동용 자료구입비를 전체자료구입비의 10%이상 배분, 더불어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구입비도 1개 종합대학 도서관 자료비 예산 규모인 7억원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어 이러한 실정에서는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은 물론 도서관협력망의 구심체 역할도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5억원이상(운영비의 20%수준)으로 대폭 증액되어야 할 것임.

다. 재원확보

- ①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자립도가 특별시·직할시를 제외하고는 평균 42.4%에 불과하고, 교육부 소관 공공도서관들도 그 운영비의 80%이상에 학생들의 수업료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불 때 도서관 운영 및 자료구입비의 국고지원이 절실히 요망되므로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에 명시된 사업범위에 국립공공도서관 운영 및 자료비 지원 항목을 설정하고 그 기준율과 부담률을 명백히 하여 지금과 같이 정치적 흥정에 의한 재정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2) 대학도서관

- ① 4년제의 경우는 학생 1인당 건물면적 1.1㎡인 현수준을 후술할 장서개발계획에 따른 석·박사과정, 교수·학습지원집서단계 지원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학생 1인당 3.2㎡수준으로, 전문대는 현재 1인당 0.45㎡수준을 2㎡수준으로 향상시키고 대학설치기준령 및 전문대학설치령에 제시된 법적 기준도 낮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학생1인당 1.21~1.32㎡(법적기준을 1인당 면적으로 환산한 것임)인 현 기준을 2.5㎡수준으로, 전문대는 학생1인당 약 0.6㎡(환산면적임)인 현 기준을 1.64㎡수준으로 상향조정토록 하여야 할 것임
- ②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어려운 가정학습환경을 고려하여 불 때 바람직한 학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4년제는 현재 총학생수의 22.8%인 열람석수를 25%로, 전문대는 총학생수의 11.7%인 수준을 20%로 향상시키도록 관계법령 법적기준의 개정이 요망됨.
- ③ 4년제의 경우 학생 1인당 평균 장서수 27.25권, 연차증가 2.12권, 연속간행물 0.15종인 현수준을 석·박사과정 지원 집서단계인 학생1인당 기본장서량 70~80권, 연간증가 3권, 연속간행물 0.5종 이상이 되도록 하고, 전문대도 현재 학생 1인당 평균 장서수 7.6권, 연간증가 0.68권, 연속간행물 0.42종인 수준을 학생1인당 15권, 연간증가 1권, 연속간행물 학과당 10종(자연계 15종) 이상으로 향상시키도록 하고, 전문대학 설치령의 법적기준도 이 수준으로 상향조정토록 하여야 할 것임.
- ④ 상기한 자료확충계획을 만족시키려면 대학 총예산액에 대한 자료구입비 배정비율을 4년제는 현재 평균 1.5%인 수준을 대학 총경상비(시설비·병원경비제외)의 4% 이상수준으로, 전문대는 현행 학생 1인당 평균 12,300원인 수준을 대학 총경상비의 1.5%이상 수준이 되도록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부 당국

도 대학운영비의 등록금 의존도가 국립종합대 56%, 사립대 73%인 점을 감안하여 국립대의 자료구입 국고보조의 경우는 1권당 단가를 현 6,000원에서 10,000원으로 증액시킴과 아울러 「국립교육기관예산(안) 조정기준」을 물가상승율에 맞춰 연6%씩 상향조종토록 하고, 사립대의 경우도 '90~'94기간중의 도서구입 국고보조 지원계획을 보면 총 475억원을 책정하여 많은 배려를 하고는 있으나 도서구입투자가 너무 빈약한 현실여건을 고려하여(평균 37\$, 하버드대 571\$, 동경대 790\$) 동 기간동안 지원되는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국고보조(총 1,645억원)를 줄여서라도 현 지원금을 2배 이상으로 증액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임

(3) 학교도서관

- ① 현재 3원화되어 있는 도서관, 시청각실·컴퓨터실을 하나로 통합시켜 종합교육자료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금까지 도서위주로만 이루어졌던 도서관자료를 교수-학습과정에 필요한 모든 비도서형태의 교육자료도 포함시켜 교수-학습현장에 동시에 투입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② 현재 도서관이 미설치된학교(국민학교 43%, 중학교 28%, 고등학교 19%)는 조속히 설치를 완료하고, 학생 1인당 도서관 면적은 현재 국민학교 0.054㎡, 중학교 0.099㎡, 고등학교 0.17㎡인 수준을 국민학교 0.2㎡, 중·고등학교 0.27㎡의 수준이 되도록 학교시설·설비기준령을 개정토록하고, 도서관을 종합교육자료센터로 할 경우에는 적어도 학생 1인당 0.64㎡를 갖추도록 하여야 할 것임.
- ③ 열람석수는 현재 국민학교의 경우 학생수의 3.3%, 중학교 5.8%, 고등학교 10.5%인 수준을 초·중·고등학교 공히 최소한 학생수의 10%이상 수준이 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해 나가야 할 것임.
- ④ 학생 1인당 평균 장서수는 현재 국민학교 2권, 중학교 2.5권, 고등학교 2.4권인 수준을 최소한 학생 1인당 국민학교 도서 3권, 시청각자료 1.5종, 중학교 도서 5권, 시청각자료 2.5종, 고등학교 도서 6권, 시청각자료 3종의 수준으로 상향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상기수준에 도달한 이후에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학생 1인당 국민학교 도서 6권, 시청각자료 3종, 중·고등학교 도서 10권, 시청각자료 5종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며, 연차 증가량은 현재 학생 1인당 평균 국민학교 0.17권, 중학교 0.097권, 고등학교 0.12권인 수준을 최소한 학생 1인당 국민학교 0.3권, 중학교 0.5권, 고등학교 0.6권 수준으로 상향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는 적어도 학생 1인당 국민학교 0.6권, 중·고등학교 1권을 갖추도록 하여야 할 것임.
- ⑤ 장서구성의 질적향상을 위하여는 자료구입비를 자율적 경비에서 독립시키고, 현재 학생 1인당 평균 국민학교 299원, 중학교 297원, 고등학교 603원인 수준을 학생 1인당 최저 국민학교 3,600원 이상(월 300원 이상), 중학교 4,800원 이상(월 400원 이상), 고등학교 6,000원 이상(월 500원 이상)으로 기본경비를 책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4) 전문도서관

- ① 직할시 및 도단위 국립지방도서관 설립을 추진하여 장차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고, 주제별로 전문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특별재정지원에 의한 전문주제분야 정보센터로 육성·발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여야 할 것임.
- ② 과학기술처 당국은 과학기술활동의 기본이 정보의 수집·축적·가공을 통한 재생산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산하 연구소 정보관리부서의 과학기술정보자료 확충방안을 강구하고, 현재 소속기관 전체예산의 0.78%수준인 정보관리부서 예산을 전체 예산의 2~3%수준으로 끌어올려 질적 정보봉사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